

고 소 장

고소인 1. 이 승 희
2. 김 은 영

위 고소인들 주소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의 3 안국빌딩 신관3층
연락처 : 723 - 5052(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피고소인 1. 김 홍 기
2. 김 종 환
3. 한 용 외
4. 조 두 현
5. 조 관 래
6. 이 학 수

위 피고소인들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7의 19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위 피고소인들을 별지 기재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고소하오니 엄중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 11. .

위 고소인 이 승 희

김 은 영

고 소 사 실

I. 당사자의 지위

고소인들은 1999. 6. 28.자로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이하 '삼성SDS'라고 합니다)의 주식 각 10주를 1주당 금 17만원에 인터넷 거래(www.pstock.co.kr, www.jstock.com 등)를 통해 취득하여 위 삼성SDS의 주주가 된 자들입니다.

피고소인 이학수는 삼성SDS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며, 나머지 피고소인들은 삼성SDS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II.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결정

피고소인들은 1999. 2. 25. 08:00 - 09:00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7의 19 일 옥빌딩 24층에 있는 삼성SDS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건'을 상정하여 결의하였고, 그 후 이사회에서 결의된 내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실제발행이 이루어졌습니다.(이하 별첨 '이사회 의사록' 참조)

- 아 래 -

1.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제20회)
2. 사채의 권면총액 : 금 이백삼십억원정(₩23,000,000,000)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4. 사채의 이율 : 년 8%
5. 이자지급 방법 : 매 3개월마다 당해기간 이자 후급
6. 원금상환 방법 : 만기일시 상환

7. 신주인수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인수권 행사비율 : 100%

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 7,150원

다.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조정 : 추후 유·무상증자 및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될 수 있음

라.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마.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지급 방법 : 신주인수권 행사를 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주식이 발행된 것으로 함

바.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 사채발행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사. 신주의 납입방법 : 현금

아. 본 사채는 신주인수권을 분리할 수 있다.

8. 청약일 : 1999. 2. 26.

9. 인수자 : SK증권(주)

10. 기타 : 관계기관의 조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Ⅲ.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및 인수경위(이하 별첨 '삼성SDS 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참조)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유통경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삼성SDS는 위 이사회 결의에 의거하여 1999. 2. 26.자로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금 230억원을 발행하면서 사채권에 부가하여 1년 후 1주당 금 7,150원의 가격으로 신주 3,216,738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날 SK증권(주)을 주간사로 하여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총액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금 230억원에 이를 일괄매각하였습니다. 그 후 SK증권은 위와 같이 총액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사채권은 같은 날 삼성증권에게 사채유통수익률 10%를 적용하여 21,820,000,000원에 매각하였고, 신주인수권증권은 대규모기업집단 '삼성'의 특수관계인인 이재용 등 6인에게 1,180,000,000원에 매각하였습니다.

한편 삼성증권은 1999. 2. 26. SK증권으로부터 인수한 사채권 21,820,000,000원을 같은 날 신주인수권을 매입한 이재용 등 특수관계인들에게 수수료 없이 같은 금액으로 전량을 매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SDS는 자신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사채권 + 신주인수권증권) 230억원 전액을 발행 당일에 SK증권과 삼성증권을 매개로 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삼성그룹의 동일인인 이건희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이상 삼성그룹회장이자 삼성SDS의 비상임이사로 있는 이건희의 자녀들), 이학수(삼성구조조정본부장이자 삼성SDS의 감사임), 김인주(삼성구조조정본부 전무로 있음)에게 인수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자 및 인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인수자	관계	인수가격		
		사채권	신주인수권증권	계
이재용	이건희의 자	4,458,890(20.4%)	241,110(20.4%)	4,700,000
이부진	이건희의 녀	3,225,580(14.8%)	174,420(14.8%)	3,400,000
이서현	이건희의 녀	3,225,580(14.8%)	174,420(14.8%)	3,400,000
이윤형	이건희의 녀	3,225,580(14.8%)	174,420(14.8%)	3,400,000
이학수	삼성전자 대표이사	5,122,980(23.5%)	277,020(23.5%)	5,400,000
김인주	삼성물산 감사	2,561,490(11.7%)	138,510(11.7%)	2,700,000
계(6명)		21,820,100(100%)	1,179,900(100%)	23,000,000

2.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실질적 인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 삼성SDS가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전에 이미 중간 매입자를 삼성증권으로 하고, 최종 매입자를 특수관계인들로 결정한 후 주간사인 SK증권에게 매수처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위험부담 없이 인수할 수 있음을 통보한 사실 및 2) SK증권은 이러한 사실을 삼성증권 실무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삼성증권이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수할 매수처임을 확인한 후 삼성SDS와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총액인수한 후 이미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한 사실과, 3) 삼성SDS가 SK증권에 매각한 대금과 SK증권이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삼성증권 및 특수관계인들에게 매각한 대금이 230억원으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이 건 거래가 모두 1999. 2. 26. 하루만에 완료되었음을 고려할 때 삼성SDS의 주도하에 SK증권과 삼성증권을 우회하여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전량을 특수관계인들에게 매각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 및 4) 조사를 받은 삼성SDS 스스로도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당시 사전에 특수관계인들에게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발행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삼성SDS가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위 특수관계인들에게 사실상 직접 발행해준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V.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부당성

1. 장외시장 거래가격(별첨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및 '일일가격표' 참조)

삼성SDS는 비상장회사여서 발행주식에 대해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나 위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이 발행주식 중 2,200,000주(18.3%)를 보유하고 있어서 위 회사가 직원들이 소유한 우리사주의 유통을 허락한 이래 장외거래 시장에서 유통가격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로 인터넷을 통하여 거래된 위 회사 주식의 거래가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인 1999. 2. 26. 이전 1개월간 평균 주당 금 54,750원 - 57,000원에 이르고 있었고, 그 후 1999. 9. 9.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SDS가 협회중개시장에 등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

하여 주당 금 141,500원이라는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들 역시 1999. 6.경 인터넷 거래시장을 통하여 주당 17만원의 가격으로 삼성SDS의 주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장외시장 거래가격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정상적으로 형성된 시장가격으로 볼 수는 없으나 향후 삼성SDS가 협회중개시장에 등록하는 경우 형성될 정상적인 시장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 장외시장의 거래가격이 향후 협회중개시장에서 형성될 가격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이재용 등의 특수관계인들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가능한 2000. 2. 27. 이후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행사가격에 비교하여 엄청난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삼성SDS의 등록이 늦어지더라도 장외거래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한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특수관계인들이 어떠한 사유로건 막대한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위 이재용 등 특수관계인들이 얻을 수 있는 차익의 규모는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의 장외시장 거래가격인 주당 금 54,750원을 기준으로 할 때 무려 금 1,500억원 정도(약 320만주 × 주당 차액 금 47,600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며 최근의 장외시장 거래가격을 고려하면 그 차익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장외시장 거래가격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서 정해졌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별첨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참조)

공정거래위원회는 1) 신주인수권증권상의 주당 인수가격(1주당 금 7,150원에 3,216,738주의 신주를 인수할 권리)이 발행당시 및 조사시점의 장외시장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이라는 점, 2) 삼성SDS가 1997.까지는 당기순이익이 100억원 미만이었으나 1998.에는 계열회사인 삼성전자로부터 1998. 7. 1.자로 시스템사업을 양수하는 등의

원인에 힘입어 당기순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한 200억원에 이르고 있는 등 재무상황이 대폭 향상되고 있었던 점, 3) 삼성SDS가 속한 전산인프라 및 시스템관리사업의 시장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고 동 시장에서 삼성SDS의 시장점유율이 1위로서 성장 및 수익전망이 매우 유망한 상황이었다는 점, 4) 삼성SDS 주식의 장외시장 거래가격이 1999. 1. 이후 계속하여 주당 금 5만원 이상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삼성SDS가 독립적인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다면 그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나오는 상속세법상 과거의 수익가치를 반영한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았을 것이고 최소한 미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한 평가방법에 의해 그 이상의 가격으로 정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최소한 미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한 평가방법에 의할 것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삼성SDS의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의 변화추이가 1996. 99억원에서 1997. 115억원, 1998. 195억원으로 연평균 약 40%가 증가하였음에 비추어 1999. 및 2000.의 법인세법상 사업소득 역시 각각 전년에 비해 40% 정도 증가할 것을 전제로 하여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변형한 공식 $\langle [(자산가치 + 미래의 수익가치) \div 2] \times 1.1 \rangle$ 에 의하여 산출된 주당 금 14,536원이 통상적으로 보아 적절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정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과 비교하면 위 이재용 등 특수관계인들이 취득할 차익의 규모는 약 220억원 정도 됩니다.

3.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시행세칙에 의한 적정가격의 산정(별첨 '삼성SDS 주식 가치 추정자료' 참조)

삼성SDS의 김홍기 대표이사는 1999. 1. 22.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2002년 목표로 추진했던 상장계획이 외자유치를 통해 연내로 앞당겨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박주완 재무담당 상무도 "삼성SDS는 상장조건 중 잉여금이 납입자본금 600억원의 2배인 1,200억원이 되어야 하는 것 외에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외자의 일부는 차입금을 갚

는데 쓰고 일부는 자본잉여금으로 전환, 총 잉여금을 1,200억원으로 늘리면 상장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한 사실이 있습니다.(연합뉴스 1999. 1. 22.자) 그 후 삼성SDS는 1999. 6. 3.자로 21세기비전 '디지털피아21'을 선포할 당시 삼성SDS가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화투자 증가와 시장여건 호조로 상반기에만 3,000억원 이상을 수주했고, 총매출은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연말까지 500억원 이상의 경상이익을 낼 것이라고 전망하였고, 그러한 경영호조를 바탕으로 2000년에는 코스닥에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 삼성SDS 회사관계자 역시 회사주식이 장외시장에서 11만원을 호가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어 등록 후 황금주로 부상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연합뉴스 1999. 6. 3.자)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0. 2. 27.부터 사채의 만기까지로 정해졌고, 발행시점에서 삼성SDS 경영진은 삼성SDS가 1999.말 또는 늦어도 2000.경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에 등록하게 될 것이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장외시장에서 삼성SDS 주식이 활발하게 거래되면서 장외시장의 거래가격이 형성되기 시작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최소한 코스닥시장 등록을 예정한 공모가격(주식의 본질가치 기준) 이상이 되었어야 합리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삼성SDS의 추정자산가치와 추정수익가치를 산출하여 계산한 삼성SDS 주식 공모시의 주식의 본질가치를 추정하면 1주당 약 11,599원 정도가 됩니다.(위 '디지털피아 21'에 의한 내용과 삼성SDS가 삼성전자로부터 연간 약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이 기대되는 시스템 사업부를 양수한 점을 고려하면 위 추정수익가치는 매우 보수적인 관점에서 산정된 수치이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경영진이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준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을 정했다면 장외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위와 같이 산정되는 공모가격 이상의 수준으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을 정하였

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장외시장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산정한 최소한의 추정 공모가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위 이재용 등 특수관계인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이 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게 될 차익의 규모는 무려 약 140여억원에 달하는 것입니다.

V.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자들의 자금출처도 의심스럽습니다.

자금동원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위 이재용을 제외한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자들은 모두 개인들로서 개인재산을 동원하여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 특수관계인들의 자금출처도 의심스러우므로 거액의 인수자금을 조성한 경위에 대하여도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자금조달과정에서 삼성SDS 기타 삼성그룹 계열회사의 지원 기타 조세의 탈루혐의가 드러나면 탈루세금이 추정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VI. 결론

피고소인들은 삼성SDS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위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결의한 바 있습니다.(피고소인 이학수는 감사로서 의결권한은 없으나 그 직무상 동일한 주의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소인들이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있어 부당하게 저가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을 정하여 발행함으로써 삼성SDS는 공정한 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을 정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을 때와 비교하여 최소한 14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동시에 부당하게 저가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위 이재용 등의 특수관계인들은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소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상법 제382조 제2항에 의거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상법 제382조의 3에 규정된 충실의무에 위배하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소

인들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위 이재용 등 특수관계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가 50억 원 이상이므로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본 사건은 삼성그룹의 3세(위 이재용)로의 그룹승계 과정과도 관련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수법에 있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비상장 우량계열사를 활용한 에스원이나 제일기획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비상장 우량계열사를 이용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3세에게 막대한 상장차익을 취득시키는 행위는 너무나 비도덕적인 행위입니다. 나아가 총수가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이사 등의 경영진을 내세워 합법을 가장하여 부당한 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부를 총수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로 유출시키는 행위는 자본주의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고 사회 일반인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기업범죄를 시정하지 않고서는 사회정의를 구현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하며 진실이 밝혀지는 바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 | | |
|--------|--|
| 참고자료 1 | 이사회 의사록(삼성SDS) |
| 참고자료 2 | 시민단체(참여연대)의 질의서, 조사요청서, 보도자료 |
| 참고자료 3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
| 참고자료 4 | 삼성SDS등 비상장주식 인터넷거래가격표 |
| 참고자료 5 | 관련 신문기사 |
| 참고자료 6 |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시행세칙에 의한 삼성SDS 주식 가치 추정자료 |
| 참고자료 7 | 법인등기부등본(삼성SDS) |

참고자료 8

감사보고서('98)

참고자료 9

사업보고서('98)